

위탁변경신청

사 건 2000 푸 000호

○○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수용중 보호소년 ○ ○ ○

보호자 🗌 🗎

보호소년과의 관계: 보호소년의 모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위 소년에 대한 강도상해 보호사건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귀원의 결정에 의하여 현재 ○○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중인 바,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탁변경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 청 취 지

위 보호소년을 보호자 □□□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본건 보호소년은 당 ○○세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인 집에서 동거하면서, ○○고 등학교 ○○과 ○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바, 이건 범행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배가 고파서 순간적으로 휩쓸려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, 보호소년은 이건 이외에는 달리 처분이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습니다.
- 2.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, 보호소년도 2달여간의 구금생활동안 깊이

반성하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.

- 3. 보호소년은 현재 ○○고등학교 ○학년에 재학 중이며. 본 학교의 학칙에 목으면,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호소년은 현재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여, 위와 같은 퇴학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여, 보호소년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, 위탁변경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진 정 서2통1. 탄 원 서1통1. 재학증명서1통1. 주민등록등본1통

2000년 0월 0일

위 신청인 보호자 ○ ○ ○ (인)

○ ○ 가 정 법 원 귀 중

		H한법률구조공단
가위탁의	사건의 조사·심리의 필요에 의하여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임시: 를 가위탁이라 함(소년법 18조1항)	
가위탁의 요 건	1. 심리조건이 있을 것 2. 소년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.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4.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5.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6. 소년을 수용하여 심신감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	
피위탁자	1. 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 2. 병원·소년분류심사원 기타 적당한 시설	
가위탁의 변 경	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조치로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변경할 수 있음.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불복절차 없음	